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38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사업연계담당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김수경	이용철	민지선	02/29 박형중		
협 조	<p style="text-align: center;">자치 행정담당 이철암</p>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감사패 수여계획

2016. 3.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감사패 수여계획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 하면서 지역의 복지생태계 조성 및 3무2유 구현, 지역복지 증진 및 구정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조례 제896호, 2011.12.31제정)
 - 제2조(포상대상)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 제6조(감사장)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12조(포상절차) ②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II 감사패 수여계획

- ☐ 일 시 : 2016. 3. 7.(월) 16:00
- ☐ 장 소 : 미래기획실 6층
- ☐ 대 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윤종희(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 훈 격 : 구청장
- ☐ 공 적
 - 2010년부터 대표협의체 위원장직의 적극적 직무수행으로 으로 지역복지 증진 및 구정 정책사업에 기여
 - 지역의 공동추진사업에 적극적 협조로 성북형 복지생태계 구현에 이바지
- ☐ 소요예산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1개 = 100,000원

- 예산과목 :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 지역복지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III

관련법 검토

공적심의 : 생략가능(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12조(포상절차) ② 표창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 공무원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부행위 : 해당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 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VI

행정사항

- ☐ 감사패 표창번호(연번) 부여 : 자치행정과



감 사 패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윤종희

귀하는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남다른 노력과 헌신으로 직무에 임하여 민·관의 상호 협력 및 연대를 통한 3無 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6년 3월 7일

성북구청장 김 영 배